

II.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1. 연혁

우리 나라 언론은 이미 1957년 4월 7일 제1회 신문의 날에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했고 1961년에는 신문윤리위원회 설립에 이어 윤리실천요강도 마련했다. 이는 타율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제도적 장치였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창립식에서 “...만일 허위, 왜곡, 과장으로 참된 신문의 자유를 모독하는 악덕 신문인이 있다면 본 위원회의 단호한 제재를 받을 것이며 신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시민들은 서슴지 말고 본 위원회에 제소하기를 바란다”고 내외에 선언했다. 그리고 전국의 일간신문, 통신사의 편집인들은 신문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 창립 초기 약 10년간은 비교적 활동이 활발했으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피해자의 제소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한 피해구제가 유명무실화되자, 1980년 10월에 개정된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책임과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새삼 강조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의 언론피해자도 이러한 헌법규정이 아니라도 민·형사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식 소송절차를 통한 피해구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으로써 언론보도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필요로 하는 언론분쟁사건에서는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언론중재제도가 발족된 시기인 1980년대 초까지 언론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은 제49조에서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하면서 첫째, 언론사에 대해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이 청구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셋째, 중재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넷째, 중재 불성립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섯째, 이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여섯째,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법원은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구제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언론기본법의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기본골격은 이 법이 1987년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에서도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으나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때까지 사용되어 왔던 정정보도청구권의 개념은 일찍이 프랑스·독일에서 활용되고 있던 반론권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청구권과는 구별된다는 학설과 판례⁵⁾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1995.12.30 개

정된 정간법(1996. 7. 1부터 시행)에서는 용어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근거

(1) 이론적 근거

반론보도청구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 역시 많은 자유와 권리 중의 하나로써 이와 대립되는 다른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그것이 자유와 권리로서 시인되고 보장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만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까지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는 ‘자유와 권리의 내재적 한계이론’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주요한 논거가 된다. “자기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은 이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

(2) 실정법적 근거

반론보도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로서는 헌법과 하위 법령으로서의 언론관계법령 및 민법을 들 수 있다. 먼저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금전적 배상은 물론 원상회복을 위한 반론보도청구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⁷⁾ 기타 동법 제10조(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및 제32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반론보도를 통한 인간의 인격권보장 내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

5) 대판, 1986.1.28, 85다카1973 판결은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위 규정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언론사측으로서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6)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6년 겨울호, pp.29~30.

7) 양경승, 위의 논문, p.30 ; 강현중, 「반론보도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6년 가을호, p.8.

서 실정법적 근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언론관계법령으로서 정간법,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 등을 들 수 있다. 정간법 제16조에서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제1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서는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중재전치주의 등을, 그리고 동법 제19조의2에서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41조와 제42조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에서도 반론보도청구의 인정근거와 정간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반론보도청구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3.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우리 나라 대법원은 일찍이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반드시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목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대상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이다”고 판결⁸⁾하면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1991년 9월 16일 결정 89헌마165에서 “정간법 제16조 및 방송법 제41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비록 그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언론기본법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1995년 개정된

8) 대판, 1986.1.28, 85다카1973.

정간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용어 자체를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정정권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반박권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언론사는 물론이요 심지어 법원에서도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원래 넓은 의미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정정권과 반박권으로 나눌 수 있다.⁹⁾ 그런데 반론권에 관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초기에는 이를 정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였으나, 현재는 이를 반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언론법상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을 반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Ⅲ.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1. 실체적 요건

(1) 청구의 대상

정간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청구대상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개념요소는 정기간행물, 공표 및 사실적 주장 3가지라고 하겠다.

(가) 정기간행물, 기타

정간법,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이 청구의 대상으로서의 매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정간법 제2조 1호에서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를 년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그 개념범위가 확실하다고 하겠다. 다만 통신의 경우에는 직접 자체의 방송 채널을 운영하거나 신문, 잡지 등을 간행하지 않고 국내외로부터 취재, 수집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다른 언론사가 이를 받아 보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통신사 스스로 일정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언론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나 방송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정기간행물의 한 종류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도 전제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통신사의 책임과는 별개로 전재보도한 언론사는 독자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¹⁰⁾

9) 양경승, 앞의 글, p.32.

10)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6.9.18, 95나41965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기사의 경우에 연합뉴스